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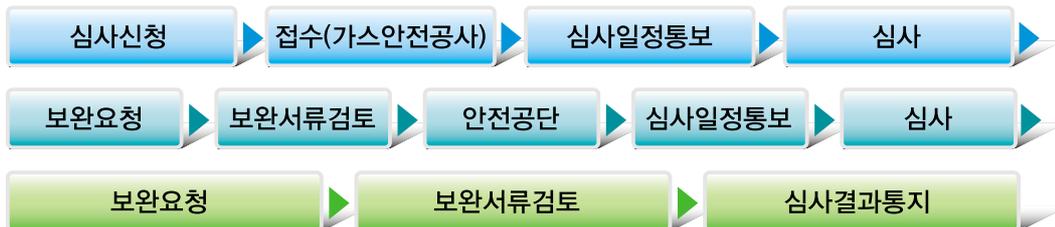
심사 및 확인절차

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3항 내지 6항



심사절차

02
복합심사



- ▶ 심사기간 : 접수 후 1개월 내(공사 15일, 공단 15일)
-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통보
- ▶ 확인절차 : 공단 단독심사시와 동일함

공정안전 보고서

관련 주요 질의회신

- Q** | 대규모 석유화학공장 등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만 제출대상인지?
A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에 따른 시행령에는 업종대상 (7개 업종) 및 규정수량대상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수량 대상사업장의 경우에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으로 취급할 경우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Q** | 공사착공이란?
A | 관련고시 제2조(정의)3호 공사착공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할 경우에는 대상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 주요구조부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를 착공하기 30일 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목공사 등 전체공사의 시작이나 사무실 등의 공사가 아닌 계획서 심사대상 시설물 및 설비의 착공 시점을 의미합니다.
- Q** | 설치·이전 심사와 주요구조부위 변경심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 ▶ 설치·이전심사는 최초로 공장을 설치·이전하는 경우로 업종대상사업장에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나, 규정수량을 초과하는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주요구조부위 변경심사는 관련고시 제2조(정의)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장치·조명설비 등의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 팩스	소재지	관할 구역(지역본부/지도원)
경인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 •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TEL : 031-364-7510~5 FAX : 031-494-9076	(우 405-81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3층	서울 지역본부, 서울본부 지도원 강원 지도원(강릉포함) 경인지역본부, 부천 지도원 경기동부 지도원, 경기서부 지도원 경기남부 지도원, 경기북부 지도원
부산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 •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TEL : 052-282-9201~3 FAX : 052-282-9221	(우 680-012) 울산시 남구 문수로 414 중하빌딩 3층	부산 지역본부, 울산 지도원 경남동부 지도원, 대구 지역본부 경북북부 지도원, 경북동부 지도원
대전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 •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TEL : 042-826-9656~7 FAX : 042-826-9659	(우 350-330)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19 성훈빌딩 6층	대전 지역본부 충남 지도원 충북 지도원
광주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 • 호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TEL : 061-681-7254~6 FAX : 061-681-7257	(우 555-808) 전남 여수시 흥국로 24 여천 kt지사 2층	광주 지역본부 전남동부 지도원 전북 지도원 제주 지도원

2011 - 안전 -

화재·폭발·누출
유해위험설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성 확보
공정안전보고서로
 해결하세요!



공정안전 보고서(PSM) 제도란?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 미제출 등 :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출자 및 제출시기·서류·방법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어떻게 작성 하나요?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 ▶ 화학공정안전 ▶ 공정안전보고서심사 확인 ▶ 자료실에서 다운가능

제공 자료 : 관련 법령(고시),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

■ 제출 시기(해당 공사착공 15일 전까지)

- 설치·이전 : 착공일 30일 전
- 주요구조부위의 변경 : 착공일 30일 전

■ 제출 서류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공정안전보고서 2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납부

■ 제출 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심사 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 각 1회
- 변경시 : 변경완료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 제출 대상

제출 대상

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다음의 7개 대상 업종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 원유정제 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
- 복합비료제조업(단순혼합 및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 농약원제 제조업
-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 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공정설비

단위 : kg

유해·위험물질 명	규정수량	유해·위험물질 명	규정수량	유해·위험물질 명	규정수량
가연성가스	5,000(200,000)	이산화황	250,000	질산암모늄	500,000
인화성물질	5,000(200,000)	삼산화황	75,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이황화탄소	5,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포스겐	750	시아나화수소	1,000	수소	50,000
아크릴로니트릴	20,000	불화수소	1,000	산화에틸렌	10,000
암모니아	200,000	염화수소	20,000	포스핀	50
염소	20,000	황화수소	1,000	실란	5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참조 ()저장량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6항 내지 8항

-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 ▶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기법의 선정
- 위험성 평가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 및 시행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유지계획 및 지침서
-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관리 계획
- 자체감사 계획
- 사고조사 계획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 현황
-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이행수준 평가 및 점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 이행수준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사업장), 신규평가(신규대상사업장) 및 등급관리

심사 수수료

종류	규모	수수료	종류	규모	수수료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보유설비의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원유정제 처리업 나. 석유정제 분해를 재처리업 다.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학물제조업 라. 질소질 비료제조업 마. 복합비료제조업 바. 농약제조업 사.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545,000	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이상 제조 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가.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413,000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이상 3,000kW 미만	580,000		나. 규정수량의 합이 10배초과 20배 이하	447,000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901,000		다. 규정수량의 합이 20배초과	541,000
	2. 상기 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 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383,000	가.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이상 3,000kW 미만	417,000	나. 규정수량의 합이 10배초과 20배 이하	339,000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658,000	다. 규정수량의 합이 20배초과	379,000	